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138호

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「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 사업」 연장공고

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R&D) 「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본 공고는 기 공고된 공고번호 제2026-022호의 연장 공고로써, 최초 공고일(’ 26.1.12)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0일(금)
산업통상부 장관

1. 사업개요

가. 목 적

○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,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기업 취업 유도

나. 내 용

○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외국인 석·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·중견기업 중심의 산학프로젝트·인턴십 등 수행

※ (대상) 비수도권 이공계 대학원 재학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(GKS)

- 산학프로젝트 수행(4개월~10개월 내외 권장)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역량 강화 및 학위취득 지원

  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의 연구분야와 산학프로젝트 주제 매칭여부 등 검토

- 산학프로젝트 연계 기업과 인턴십(2개월 이상 권장)을 통해 국내 지역기업과의 접점 확대

다. 지원 분야 : 이공계 전분야

라. 지원 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 : 2026년 정부출연금 30억 원 내외 / 5개 과제 선정

  *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: 6억원 내외

○ 지원기간 : ’26. 3월 ~ (과제당 연 6억원, 최대 5년)

총 연구개발기간	단계관리	
	1단계	2단계
5개년	1~3차년도	4~5차년도

  * 당해연도 지원기간 : 2026. 3. 1. ~ 2027. 2. 28. (12개월)
  *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2. 신청 대상

○ 신청대상 : 지역기업-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산학프로젝트, 인턴십 등을 기획·운영할 수 있는 비수도권 4년제 대학

  *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기업과 협력계획(참여의향서 등)을 보유하고 있어야함

○ 지원 방식 : 자유공모

○ 추진체계 : 단일 대학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
- (유형1 단일대학) 국내 1개 대학 단독 지원
- (유형2 컨소시엄) 국내 1개 대학(주관연구개발기관) 및 N개 대학(공동연구개발기관) 공동 지원

  * 컨소시엄 구성체계는 붙임의 시행계획 참조

3. 수행기관 선정

가. 평가방법

ㅇ 서류검토 : 자격요건, 신청서류 구비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판단

ㅇ 발표평가 : 기한 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 부합성,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
ㅇ 지원과제 선정 :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나. 평가기준

ㅇ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취업 연계를 위한 대학역량(산학협력·유학생 관리 등), 사업 운영계획, 인력 도입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

ㅇ 사업 참여가 가능한 정부초청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보유 현황 및 참여 학생 선발계획의 타당성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초청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선발(연 20명 이상), 산학프로젝트 발굴 및 인턴십 수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· 운영 역량

ㅇ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, 참여기업 의지

*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수행(산학프로젝트 제외)을 위한 기관부담금 20% 이상 의무

ㅇ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

다. 우대사항

ㅇ 우대사항 : 첨단산업 분야* 우대

*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: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디스플레이, 로봇, 방산, 인공지능, 첨단 모빌리티('26.1월 기준)

라. 세부 평가기준(안)

평가항목	평가요소(내용)	배점
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(70)	•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	10
	•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- 사업목표(최종, 당해)의 적절성 -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- 산학 프로젝트, 인턴십 운영 계획의 적절성 -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-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	45
	•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	15
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(10)	• 학술적·기술적·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 •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	10
연구개발 역량 (20)	•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•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)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	20
합계		**100**

마. 제한사항

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(3책5공)을 적용하지 않음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에 한해 신청 가능

ㅇ 과제당 정부초청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양성 목표인원은 매년 최소 20명 이상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

4. 성과활용 및 기술료

가. 성과활용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, 산학프로젝트 성과, 외국인 유학생 정주율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

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,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(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」 제44조)

나. 기술료

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

5. 유의사항

가. 수행기관 의무사항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운영 전담인력(참여율 50% 이상)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산학프로젝트, 인턴십 관리와 시간제 취업허가 등을 지원하여야 함. 해당 사업운영 전담인력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음

ㅇ 산학프로젝트에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은 최소 1명 이상 참여해야하며, 참여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참여율은 각각 50% 이상으로 해야함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-학생간 인턴십 운영시 근무환경, 직무수행 적합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함

ㅇ 동 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인턴십 운영과정에서 사전 운영계획과 현저히 상이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사업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

확인될 경우, 기업은 지원받은 국비 전액 이내를 수행기관(대학)에 반납하고 수행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반납함

ㅇ 산학프로젝트, 인턴십 우수사례 발굴 및 대내외 홍보 추진 등

나. 외국인 유학생 의무사항

ㅇ 외국인 유학생은 산학프로젝트 연계 인턴십 수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대학에 제출 해야함.

ㅇ 동 사업 지원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, 해당자에 지원된 국비 전액 이내를 수행기관에 반납하고 수행기관은 해당 금액을 정산 시 반납함

다.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

* 하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름

ㅇ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, 선정 취소, 협약해약 등 조치함

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ㅇ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산학프로젝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개발 또는 지원된 과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

* NTIS(http://ntis.go.kr)의 "메뉴→사업과제→유사과제" 등을 활용, 중복성 검토

ㅇ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

ㅇ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

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

ㅇ 참여연구원(총괄책임자 포함)의 동 과제 참여율이 10%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

라. 사업비 산정기준

ㅇ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적용 대상 사업임

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(현금)의 10% 이하로 산정함

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수당은 인건비(학생인건비 포함)의 10% 이하로 산정함

ㅇ GKS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생인건비, 인턴십 지원비용 등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(간접비 제외)는 수행기관별 해당연도 직접비(현금)의 45% 내외로 책정 및 사용해야 함

마. 유학생 선발 방식 및 기준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분야 내·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학생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

* 외부 전문가는 산업계 전문가를 2인 이상 배정하여야 함

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십 수행에 필요한 아래 최소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유학생 선발기준을 별도 마련해야 함

- (비자) 학생비자(D-2)로 체류 및 프로그램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(학력) 이공계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·박사

* 융복합 또는 자유전공인 경우 주요 이수 과목을 이공계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

- (어학) 해당 분야 수행을 위한 수준으로 선발기준 마련
- (예비합격자) 수혜학생의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십 중단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 합격자풀 확보

바. 절차 및 일정

추진절차	시행기관	일정(안)
사업공고	산업통상부 / 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6.1.12.
↓		
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전산접수)	신청기관(대학)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(IRIS)	~3.13. 17시
↓		
평가위원회 개최	한국산업기술진흥원(연구개발과제평가단)	~3월
↓		
평가결과 확정	산업통상부	4월
↓		
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4월~
↓		
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	산업통상부/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4월~
↓		
협약체결 및 사업수행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4월~

6. 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 기간 및 접수처

○ 2026.1.12.(월) ~ 2026.3.13일(금) 17:00까지 ※ 온라인 접수만 가능

* 접속자 과다, 전산입력 실수 등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

○ (접수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

나. 접수 방법

접수방법

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)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
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신청		
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·승인	연구과제 신청완료
① 연구자	② 주관연구개발기관	연구책임자	주관연구개발기관장	

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

① (연구자)
- ① IRIS 회원가입
-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
-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③: 연구책임자는 필수(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)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유의사항

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
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
③ 접수 마감일 17:00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(접수증 출력) 불가
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
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

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	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기 타	■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iris.go.kr)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*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

*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다. 신청 구비서류 (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시 별도 안내함)

번호	서 류 명	파일 형태	제출 대상기관	비고
1	연구개발계획서	hwp	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
2	기업 협력의향서	PDF	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
3	사업자등록증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4	서약서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- 연구개발기관 장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 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5	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(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)
6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,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* 영리기관의 경우,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-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(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)
7	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8	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9	연구윤리·청렴·인권 및 보안서약서	PDF	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10	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·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(해당시)	PDF	해당시 (주관+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)	- [첨부] 관련서식 활용 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11	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PDF	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	-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함 -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*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* 접수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-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

라. 문의처

○ 사업 관련 문의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손영빈 선임연구원
  (☏ 02-6009-3227, ✉ thsdudqls007@kiat.or.kr)

○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

- 시스템(IRIS) 접수 문의 (1877-2041)

  *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(https://www.iris.go.kr)

○ 기존 공고 시 제출한 기관도 연장된 공고기간까지 수정 제출 가능

  * 수정 제출 없을 시 기존 제출한 서류로 검토 및 평가 진행
  ** 선정규모 미달 시 과제 규모 및 예산 조정 가능

7. 관련 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 법령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

나. 관련 법령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, 시행규칙(이하 혁신법)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다. 관련 규정 : 하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